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 규정

[시행 2012.5.11] [국무총리훈령 제585호, 2012.5.11, 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12년 제5차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2012년 제5차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이하 “ 총회 ”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총회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종합계획
2. 총회의 개최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시설에 관한 중요 사항
3. 총회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관계 기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개최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5. 총회의 사후 정리,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총회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 위원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관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총회가 개최되는 서울특별시의 1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제7조에 따른 자문단의 단장
4. 금연정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관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총회가 개최되는 서울특별시의 2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제8조에 따른 기획단의 단장
4. 금연정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7조(자문단) ① 총회의 준비 및 개최 업무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단을 둔다.

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단의 자문위원은 학계, 비정부기구(Non - Government Organization), 금연 관련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금연정책 및 국제행사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기획단)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단을 둔다.

②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된다.

③ 기획단의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파견되거나 겸임(兼任)된 사람으로 한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소속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